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 대기 분야

기 술 능 력	시 설 및 장 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대기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 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대기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2. 수질 분야

기 술 능 력	시 설 및 장 비
1)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생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생태독성물질 시험만 하는 경우에는 (2)와 (3)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환경기준 항목

독성물질 시험으로 한정한다) 3)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수질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 4)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 오염물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	--

3. 소음·진동 분야

기술능력	시 설 및 장 비
1) 소음진동기사 또는 소음진동산업기사 중 1명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소음·진동 분야 현장 측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	1)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다만, 진동 분야의 장비는 진동을 측정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소음계와 진동레벨계 나) 소음도기록계 및 진동레벨 기록계 다) 소음계 외부교정기 2) 측정업무용 차량 1대

4. 실내공기질 분야

기술능력	시 설 및 장 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실내공기질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 3)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미세먼지(PM10) 나) 이산화탄소(CO2) 다) 포름알데히드(HCHO) 라) 총부유세균 마) 일산화탄소(CO) 바) 이산화질소(NO2) 사) 라돈(Rn) 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자) 석면 차) 초미세먼지(PM-2.5) 카) 곰팡이 타) 오존(O₃)(「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 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	--

5. 악취 분야

기 술 능 력	시 설 및 장 비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 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악취 분야 시료채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를 통과한 사람 1명 3)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 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가)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나)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항목을 악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복합악취 (1) 무취공기 제조장치 1식 (2) 악취희석장치 1식 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 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비 고

1.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사설을 설치하거나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가.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 나.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 환경산업기사
 -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4. 기술능력 중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의 경우 생태독성물질 시험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설 및 장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대기환경보전법」
 - 다. 「먹는물관리법」
 - 라. 「소음·진동관리법」

-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바. 「화학물질관리법」
- 사. 「폐기물관리법」
- 아. 「하수도법」
-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카. 「토양환경보전법」

6. 위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1), 제2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2), 제3호 기술능력란의 1), 제4호 기술능력란의 1) 또는 제5호 기술능력란의 1)의 인력이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2), 제2호 기술능력란의 3), 제3호 기술능력란의 2), 제4호 기술능력란의 2) 또는 제5호 기술능력란의 2)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7. 위 표 제1호 기술능력란의 2), 제2호 기술능력란의 3), 제3호 기술능력란의 2), 제4호 기술능력란의 2) 및 제5호 기술능력란의 2)의 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시료채취 또는 현장측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영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